



정인회계법인
JUNGIN Accounting Corp.

경북보건대학교 산학협력단

‘2020 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1유형)’

사업비정산 감사보고서

사업기간 : 2020년 3월 1일부터 2021년 2월 28일까지

정인회계법인

Table of Contents

1. 사업비정산감사보고서.....	1
2. 별첨	2
2.1. 사업비 사용총괄표..	2

사업비정산감사보고서

정인회계법인

서울시 강남구 강남대로 310, 유니온
센터 1701호(06253)
Tel (02) 539-5279
Fax (02) 539-5278

경북보건대학교 산학협력단 귀하

본인은 경북보건대학교('이하 대학)의 "2020 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1유형)" 관련하여 한국연구재단으로부터 지원받은 사업비의 2020년 3월 1일부터 2021년 2월 28일까지 지출한 것에 대한 사업비 집행실적을 검토하였습니다.

본인은 독립적 입장에서 본 사업비 집행내역을 확인하고 관련 지출기록을 대사하였으며 검토 당시의 사정에 비추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타의 절차를 수행하였습니다.

본인의 의견으로는 별첨의 사업비 총괄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2020학년도 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집행한 사업비 2,651,100,513원(예산 2,651,100,513원)은 협약에 따른 예산집행계획서, 한국연구재단의 집행 가이드라인, 대학의 자체 규정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적정하게 집행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21년 5월 28일

정 인 회 계 법 인

대 표 이 사 정 창 기



[별첨] 사업비 사용총괄표

사업명 : 경북보건대학교 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1유형)

사업기간 : 2020년 3월 1일부터 2021년 2월 28일까지

I. 계정과목별 집행내역

(단위: 원)

비목	예산	집행액	집행잔액
교육 환경 개선비	1,042,404,387	1,042,404,387	-
기자재 구입·운영비	265,668,900	265,668,900	-
교육과정 및 프로그램 개발·운영비	840,443,261	840,443,261	-
인건비	187,476,508	187,476,508	-
기타사업운영경비	193,399,942	193,399,942	-
간접비	121,707,515	121,707,515	-
합 계	2,651,100,513	2,651,100,513	-

예산금액에는 기초이월액 200,100,513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II. 회계점검 항목(총괄표)

1. 예산계획

가. 사업계획 및 예산배분의 적절성

사업계획서에 의거하여 예산배분이 적절하며,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예산으로 적정하게 계상되어 있습니다.

나. 사업계획 변경시 절차의 적합성

사업계획 변경시 사업운영위원회의 자체 심의를 득하고 절차를 적절하게 구비하고 있습니다.

2. 예산집행

가. 사업비 집행 절차 및 규정의 준수 여부

사업비 집행은 교내 중앙관리에 따라 회계부서의 승인 및 지출 체계하에 이루어지고 있으며, 한국연구재단 사업비 집행 가이드라인 및 학내 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III. 세부 점검 항목(사업비 집행 절차 및 규정의 준수 여부)

구분	점검 항목	점검 결과		
		네	아니오	해당 없음
[1] 인건비 (4)	1-1. 동 사업을 위한 교원 및 전담직원 신규 채용 시 사업계획에 따라 채용 계획을 수립하고 적절한 절차를 거쳐 채용업무를 추진하였는가? - 사업관련 업무를 수행함을 증빙하여야 함(채용계획, 계약서 등)	✓		
	1-2. 기존 교직원에 대한 급여, 성과급, 직무교육비, 연수비 등을 지급 하였는가?		✓	
	1-3. 경상비 성격의 경비를 집행하였는가? - 기존 교직원에의 정규수업에 따른 인건비, 인센티브 및 사업관리 운영을 위한 수당(보고서 작성 수당, 사업운영위원회 수당, 보직 수당, 자체평가 수당, 정규강의 수당, 전산개발 수당 등) 집행 불가		✓	
	1-4. 신규 채용 인원에 대한 성과급은 관련 규정에 의하여 적절한 평가를 거쳐 집행하였는가?			✓
[2] 장학금 (5)	2-1. 사업 목적 및 프로그램에 부합하는 장학금 지급 기준을 마련하였는가?	✓		
	2-2. 부적격자(입학 전 신입생, 휴학생, 졸업생 및 졸업유예생 등)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였는가?		✓	
	2-3. 사업 목적 및 프로그램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성격의 각종시험 격려금, 취업 실적금 등을 지급하였는가? - 단순 참여, 격려성, 포상 성격의 장학금 지급 불가		✓	
	2-4. 근로시간에 따라 지급되는 재학생 업무보조 장학금 지급 시 수업		✓	

구분	점검 항목	점검 결과		
		네	아니오	해당 없음
	시간과 중복되는 근로 시간 계상 후 지급하였는가?			
	2-5. 한국장학재단에서 규정한 학자금 이중지원의 범위를 초과하여 지급하였는가?		✓	
[3] 교육·연구 프로그램 개발운영비 (15)	3-1. 교육·연구 프로그램 개발비 및 운영비 지급을 위한 합리적 기준을 마련하였는가? - 강사료, 특강료, 연구비, 자문료, 교과목개발비, 회의비 등	✓		
	3-2. 교육과정 및 프로그램 개발·운영에 따른 산출물은 대학별 자체 위원회에서 검토하는 등 질 관리 체계를 구축하였는가?	✓		
	3-3. 신규 프로그램 및 교육과정을 위한 교과목 개발 등에 대한 원고료 지급 기준을 마련하였는가?	✓		
	3-4. 원고료를 지급 기준에 따라 적절히 지급하였는가? - 기존 교재 편집에 대한 원고료 지급, 연계 교과목에 대한 개발비 이중 지급, 공개 콘텐츠의 내용을 일부 발췌 편집한 교안에 대한 개발비 지급 불가	✓		
	3-5. 정책연구 지원 시 내부에서 수립한 규정 또는 기준에 근거하여 선정 절차를 거쳤는가? - 사업과 무관한 교원 개인연구 지원 불가, 정책연구비는 교육과정 개발 등 사업프로그램과 관련되어 집행되어야 함	✓		
	3-6. 프로그램 참여 독려 등을 위한 기념품 지급 시 수령인원 등이 명기된 관리대장을 구비하였는가?	✓		
	3-7. 프로그램 참여를 독려하기 위하여 직접적으로 현금(상금)을 지급 한 사례가 있는가?		✓	
	3-8. 교육·실습활동 실소요 경비 지급 시 대학 자체 지급기준을 마련하였는가?	✓		
	3-9. 교육·실습활동 실소요 경비를 산업체에서 별도 지원함에도 불구하고 대학혁신지원사업에서 중복 지급한 사례가 존재하는가? - 교통비, 식비 등 중복되지 않는 항목은 지급 가능		✓	
	3-10. 외부기관 단순 위탁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는가?		✓	
	3-11. 학원수강료, 단순 외국어·컴퓨터 자격증 시험 응시료를 지급한 사례가 존재하는가?		✓	
	3-12. 학습동아리 및 소모임 등 학생 자치활동 지원 시 지급 기준을 마련	✓		

구분	점검 항목	점검 결과		
		네	아니오	해당 없음
	하였는가?			
	3-13. 학생 자치활동 지원비 지급 시 결과(활동)보고서 및 정산서(집행 증빙서류 포함) 등을 구비하였는가? - 학습동아리 및 소모임에서 사용하는 문제집 등은 일종의 재료비로 도서 중앙관리항목에서 제외하되 정산서는 구비	✓		
	3-14. 경상비 성격의 경비를 지급한 사례가 존재하는가? - 어학교육원, 각종 센터 등 대학 부속부설기관 운영경비 등 - 단, 대학 부속부설기관을 활용한 교육연구프로그램 개발 운영비는 지출 가능		✓	
	3-15. 사업과 무관한 경비를 지급한 사례가 존재하는가? - 사업계획서에 명기되지 않은 프로그램 운영비, 참여교수 연구비, 기업에 지급되는 대가성 비용(상품권, 기념품) 등		✓	
[4] 교육·연구 환경개선비 (2)	4-1. 건물의 신축·개축·증축, 토지매입 투자 경비를 지출한 사례가 존재하는가? - 단, 기존 건물과 건축설비의 유지 보수와 관련된 경비는 지원 가능		✓	
	4-2. 사업 연관성이 부족한 캠퍼스 조경, 보도블럭 교체 비용 등을 지출한 사례가 존재하는가?		✓	
[5] 실험·실습 기자재 구입운영비 (4)	5-1. 기자재 구입 시 활용방안 계획서를 갖추었는가?	✓		
	5-2. 3천만 원 이상의 연구 장비 구입 시 연구재단의 사전 승인을 득했는가? - 1억원 이상 시설장비·기자재 도입은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에서 운영하는 장비활용종합포털(https://www.zeus.go.kr)을 통해 직접신청	✓		
	5-3. 기자재 구입 후 자산관리대장 등록 등 체계적으로 관리 체계를 구축하였는가? - 기자재 목록 및 활용 현황을 자산관리대장으로 관리하며, 개별 기자재는 대학에서 자율부여한 관리번호 및 일련번호, 구입처원, 구입연월일 등의 정보를 포함한 스티커 혹은 바코드, RFID칩 등을 부착하여 관리	✓		
	5-4. 교원의 개인연구 활동을 위한 장비 등 교육목적 이외의 장비·기자재를 구입한 사례가 존재하는가?		✓	
[6]	6-1. 여비, 도서구입비, 일반수용비, 홍보비, 회의비, 행사비 등 대학 자체적으로 기준을 수립하여 집행하였는가?	✓		

구분	점검 항목	점검 결과		
		네	아니오	해당 없음
기타사업 운영경비 (6)	6-2. 기존 자체기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 사업을 위한 별도의 완화 규정을 재정립·적용한 사례가 존재하는가?		✓	
	6-3. 사업비로 구입한 도서에 대해서는 관리대장 등 관리 체계를 구축 운영하였는가?	✓		
	6-4. 사업효과가 미미한 일회성 행사, 교육효과가 낮은 외유성 출장을 집행 한 사례가 존재하는가?		✓	
	6-5. 경상비 성격의 경비를 집행한 사례가 존재하는가? - 대학이 통상적으로 수행해온 일반적인 목적의 업무 관련 경비(입시설명회, 교원 연수회 등)		✓	
	6-6. 사업과 무관한 경비를 집행한 사례가 존재하는가? - 사업과 무관한 홍보비(각종 광고, 입시설명회, 대학 브로셔, 사업 선정 현수막, 단순 홍보 기념 품 제작비 등), 학술활동비, 학회/연회비 등 참여 교수 개인에 대한 경비, 학회/후원금, 사업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성격의 도서 등		✓	
	7-1. 사업비를 중앙관리하지 않고 학과 및 단과대학에 이체하여 해당 부서에서 사업비를 집행한 사례가 존재하는가?		✓	
기타 (6)	7-2. 사업비의 집행은 내부품의서, 지출원인행위서 등의 집행계획에 근거해서 처리하였는가?	✓		
	7-3. 계좌이체, 법인카드, 세금계산서,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영수증 이외 간이영수증, 개인카드 등으로 부적격 지출 증빙을 구비하여 집행 한 사례가 존재하는가?		✓	
	7-4. 사업 수행 결과 발생한 과실(수익금, 특허료, 기술이전료 등)을 관계 법령에 따라 대학에 귀속하였는가?		✓	
	7-5. 당해연도 사업비의 50%를 초과하여 교육·연구 환경개선비(시설비)를 집행한 사례가 존재하는가?		✓	
	7-6. 계약방법 및 계약절차 등 세부집행절차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을 준수하였는가?	✓		